

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 제정령안

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민간 운영기관 범위 등) ① 「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”이란 농수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.

②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”이란 농수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.

③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”이란 농수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.

④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”이란 농수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.

⑤ 법 제2조제5호자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”이란 농수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사업 제안 민간기관 등)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”은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
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수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
3.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농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
4.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수산물·자연·문화 등 유형·무형의 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

제4조(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)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민간 운영기관이 부도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,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·인가·허가 등의 취소, 휴업, 폐업,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민간 운영기관이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실시계획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
3. 협약 체결 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

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

4. 사업 점검 또는 중간 평가 결과, 성과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제5조(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)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추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, 공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명

2.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

3. 사업대상

4. 사업기간

5. 민간 운영기관명

6. 개략적 사업내용

7. 성과목표

8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, 화재 등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시	2차 위반시	3차 위반시
가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,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14조 제1항			
1)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	150	200	300
2)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		200	250	300
3)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	150	200	300
4)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		200	250	300
나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검사·질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14조 제1항			
1) 서류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200	250	300
2) 질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150	200	300